

「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」 제정

1. 제정이유

- 지방세 부과·징수의 세부적 사항이나 법령해석의 통일성을 제고하기 위해 '97년 「지방세법 기본통칙」을 마련하였고, '운영세칙', '해석운영 매뉴얼' 등의 명칭으로 운영되어 왔으나, 「지방세법」분법과 함께 '11년에 「지방세관계법 기본통칙」을 다시 마련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음
- 이번에 제정되는 「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」는 기존의 「지방세관계법 기본통칙」과 목적과 내용은 거의 유사하나, 국민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하여 행정규칙의 일종인 '예규'의 형식으로 제정하여 일반 법령과 같이 관보를 통해 공포하고 법령집에도 수록되도록 하였음
- '기본통칙'이라는 명칭은 「지방세기본법」, 「지방세법」의 조문 편제상의 '통칙'과 혼선을 방지하고, 일반 국민이 보다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이미 알려진 '운영 예규'로 명칭개선을 하였음

2. 주요내용

가. 지방세기본법(160개 조문)

- 제한능력자·파산자에 대한 송달방법,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의미, 가산세 감면사유의 발생시기 및 정당한 사유, 상속인 등에 대한 환급방법 등

나. 지방세징수법(247개 조문)

- 그 밖의 재해에 대한 범위, 사업에 현저한 손실·위기 범위, 압류재산의 보관과 책임, 보증금 압류시 유의사항, 공매가 부적절한 경우 예시 등

다. 지방세법(112개 조문)

- 차량·기계장비·입목 등 취득세 과세대상 범위, 비과세 대상인 신탁의 범위, 재산분 주민세의 사업소 판단기준, 오피스텔 재산세 과세방법 등

라. 지방세특례제한법(20개 조문)

- 천재·지변 등으로 인한 감면범위, 임대 공동주택 판단기준, 교환받는 자동차 및 매매용 중고자동차 등의 범위, 대체취득 감면 기간 등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세기본법, 지방세징수법, 지방세법, 지방세특례제한법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

라. 기 타 :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(행정안전부 예규 제74호) 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누리집(정책자료>법령정보>훈령·예규·고시란)에 게시하였음